

# 항만출입시 안전수칙



## 항만 출입이란?



항만 내 선박·하역장비·화물·인력 등이 동시에 밀집하여 상시로 작업·운송·보안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의 진입·통행을 의미하며,  
일반 사업장과 달리 국제보안체계,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혼재,  
고위험 작업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

## 항만 출입 시 안전수칙

### 1 출입 승인·게이트 통제



- 출입허가를 받은 차량·인원만 작업구역 출입 게이트를 통과
- 게이트 담당자·청원경찰 지시에 따라 지정 통로로만 진입·통행
- 에이프런과 컨테이너 크레인 백 리치(Back Reach) 구간은 허가된 구역으로만 진출입·Safety Zone의 침범운행 금지
- 항만 내 위험구역은 울타리 등으로 구획화·관계 근로자가 아닌 자 출입 금지

### 2 보행·차량 동선



- 보행자는 전용 보행로 이용, 작업반경·양중물 하방 진입 금지
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시 접촉 위험 구역은 근로자 출입 금지
- 차량·장비는 작업장 지형·지반 등에 맞춰 지정 제한속도 준수

### 3 보호구



- 작업조건 및 환경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·구비·착용 (안전모, 안전화, 보안경, 안전조끼 등)
- 보호구는 상시 점검·교체 등으로 사용가능 상태 유지, 공동사용 시 감염 예방 조치 시행
- 보호구 세부 지급·관리 절차를 사업장 규정으로 수립·운영

# 항만 출입 시 안전수칙

## 4 차량계·하역장비



- 운전자는 운전석을 임의로 이탈하지 않으며, 불가피한 이탈 시 포크·버킷 하강, 시동 정지, 브레이크 체결 등 조치 이행
- 장비·수공구는 제조 목적 외 용도로 사용 금지
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시 전도·붕괴 위험 장소에서는 유도자 배치
- 운전 중 휴대전화 등 영상정보기기 사용 금지

## 5 신호·작업지휘



- 양중기 사용 작업 및 유도자 배치 작업은 신호방법을 정하고 운전자는 신호에 따름
- 사전조사·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작업은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계획에 따라 지휘
- 슬링·양화장치 등 하역설비 사용 작업은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에 작동상태, 제한하중, 슬링 상태 점검 등을 포함

## 6 기상·작업중지



- 비·눈·강풍 등 기상 불안정으로 작업자 위험 우려 시 작업 중지
- 크레인 작업은 순간풍속 기준(설치·점검·해체: 10m/s, 운전: 15m/s) 초과 시 중지

## 7 비상·응급



- 작업장·부속 건물에 비상구 설치 및 장애물 없이 깨끗이 유지
- 위험구역은 울타리 등으로 구획하고 관계 근로자가 아닌 자의 출입 금지
- 통선 탑승 또는 해상 추락의 위험이 있는 구역에는 구명용구를 갖추어 두는 등 근로자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치를 사전 숙지

## 8 휴식·대기 안전



- 교대·대기는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고, 작업구역 내 임의 대기 금지
- 기상 악화 등 이상 상황 시 지휘계통에 보고 후 지시에 따름
- 작업구역 출입 제한 준수